# 평택역 SK VIEW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370-2번지 일원(평택시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 공급대상 : 59㎡ ~ 84㎡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328호 (60㎡이하-152호, 60㎡초과~85㎡이하-1,176호)
■ 시 행 사 : ㈜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 공 사 : SK건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 공급계약 시 홍보관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홍보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시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홍보관 입장 전 체온 체크 시(체온측정온도 제외 포함 37.5℃ 이상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체온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평택역 SK VIEW 상담 전화(☎1811-7469)및 청약홈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Ⅰ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19502호(2021. 5. 7.)로 임차인모집공고 신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370-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1층~지상 최고 27층 14개동 총 1,328세대(특별공급 2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관리번호 | 악식전용면적 | 타입 | 세대별 계약면적 | | |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공급세대수 | | | | 입주예정 |
|---|---|---|---|---|---|---|---|---|---|---|---|---|
| | | | 세대별 공급면적 | | | | | 특별공급 | | | 일반공급 | 계 | |
| |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 | | 청년 | 신혼 | 세아형 | | | |
| 2021850004 | 59㎡ | 59A | 59.8228 | 20.1493 | 79.9721 | 32.5729 | 112.5450 | - | 40 | 61 | - | 101 | 2021년 11월 |
| | | 59B | 59.5349 | 20.9604 | 80.4953 | 32.4162 | 112.9115 | 19 | | 32 | - | 51 | |
| | 72㎡ | 72A | 72.8832 | 24.3406 | 97.2238 | 39.6841 | 136.9079 | 114 | - | - | - | 114 | |
| | | 72B | 72.8832 | 24.3406 | 97.2238 | 39.6841 | 136.9079 | - | - | - | 215 | 215 | |
| | 84㎡ | 84 | 84.8863 | 27.6203 | 112.5066 | 46.2198 | 158.7264 | - | - | - | 847 | 847 | |
| 합계 | | | - | - | - | - | - | 133 | 40 | 93 | 1,062 | 1,328 | |

※ 실시설계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아형 침실별 면적**

| 타입 | 공급대상 | 침실별 전용면적(㎡) | | |
|---|---|---|---|---|
| | | 안방 | 침실1 | 침실2 |
| 59A | 청년_세아형 | 14.4460 | 8.5286 | 9.8819 |
| 59B | | 17.8444 | 8.8406 | 8.5165 |

※ 상기 침실별 전용면적은 공부상 면적이 이닌 실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안방 면적은 발코니 제외면적임)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기준 (59A/59B, 72A/72B) 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분산방법 : 평형 면적(㎡) X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벽체공용,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네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인을 요청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상 기준이며, 실측정의로도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 주거전용면적(㎡) | 59.8228㎡ | 59.5349㎡ | 72.8832㎡ | 72.8832㎡ | 84.8863㎡ |
|---|---|---|---|---|---|
| 타 입 | 59A | 59B | 72A | 72B | 84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주택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타입 내 공급 구분의 차이를 위하여 72A(특별공급), 72B(일반공급)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안내 및 주택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Ⅱ 입대개간 및 입대조건

■ **입대기간**
- 이 주택의 입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입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입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입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세대, 원)

■ **특별공급 입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표준형 기준, 선택 조건별 상이)**

| 주택형 | 공급세대수 | 공급유형 | 입대보증금 / 납입시점 | | | | 월 입대료(전용) |
|---|---|---|---|---|---|---|---|
| | | | 총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 59A | 40 | 특별공급(신혼부부) | 50,000,000 | 5,000,000 | 45,000,000 | | 150,000 |
| 59B | 19 | 특별공급(청년) | 111,342,000 | 11,134,200 | 100,207,800 | | 231,000 |
| 72A | 114 | 특별공급(청년) | 125,854,000 | 12,585,400 | 113,268,600 | | 262,000 |

(단위 : 세대, 원)

■ **특별공급(청년_세아형) 입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표준조건 보증금:84,000천원, 입대료:360천원 전환율 3.5% 적용)**

| 주택형 | 공급세대수 | 공급유형 | 공급실수 | 구 분 | 입대보증금 / 납입시점 | | | 월 입대료(전용) |
|---|---|---|---|---|---|---|---|---|
| | | | | | 총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59A | 61 | 세아형(안방) | 61 | 표준형 | 36,930,000 | 3,693,000 | 33,237,000 | 158,000 |
| | | 세아형(침실1) | 61 | | 21,810,000 | 2,181,000 | 19,629,000 | 93,000 |
| | | 세아형(침실2) | 61 | | 25,260,000 | 2,526,000 | 22,734,000 | 108,000 |
| | 61 | 세아형(안방) | 61 | 선택형1 | 5,000,000 | 500,000 | 4,500,000 | 251,000 |
| | | 세아형(침실1) | 61 | | 3,000,000 | 300,000 | 2,700,000 | 148,000 |
| | | 세아형(침실2) | 61 | | 3,000,000 | 300,000 | 2,700,000 | 171,000 |
| 59B | 32 | 세아형(안방) | 32 | 표준형 | 42,580,000 | 4,258,000 | 38,322,000 | 182,000 |
| | | 세아형(침실1) | 32 | | 21,100,000 | 2,110,000 | 18,990,000 | 90,000 |
| | | 세아형(침실2) | 32 | | 20,320,000 | 2,032,000 | 18,288,000 | 87,000 |
| | 32 | 세아형(안방) | 32 | 선택형1 | 5,000,000 | 500,000 | 4,500,000 | 289,000 |
| | | 세아형(침실1) | 32 | | 3,000,000 | 300,000 | 2,700,000 | 143,000 |
| | | 세아형(침실2) | 32 | | 3,000,000 | 300,000 | 2,700,000 | 138,000 |

(단위 : 세대, 원)

■ **일반공급 입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표준형 기준, 선택 조건별 상이)**

| 주택형 | 공급세대수 | 공급유형 | 입대보증금 / 납입시점 | | | 월 입대료(전용) |
|---|---|---|---|---|---|---|
| | | | 총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72B | 215 | 일반공급 | 125,854,000 | 12,585,400 | 113,268,600 | 367,000 |
| 84 | 847 | 일반공급 | 137,872,000 | 13,787,200 | 124,084,800 | 402,000 |

- 상기 입대조건의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주택형에 따른 총 입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 전 총 입대보증금과 계약금의 차액을 납부바랍니다.
- 상기 입대조건은 최초 입대차계약기간(2년)의 입대조건이며, 입대차계약 갱신 시 입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2년 단위로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입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입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입대조건은 기업형임대주택 시행자가 적격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입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입대차계약으로부터 2년까지(입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유효합니다.

■ 신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홍보관 방문시 청약 당첨자의 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br>• 세무서 |
| | 신규취업자 | • 급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대상자<br>간이과세자<br>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br>소득세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br>•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br>•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br>•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 보험모집인<br>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br>•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br>•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 | |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일용직 근로자 | | | |
| 무직자 |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 접수장소 |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월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지명단사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 계좌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잔금 | 우리은행 | 1005-504-145315 | ㈜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902)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중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
-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 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입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입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입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입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입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당첨된 입대료는 해당 일임차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고지 및 공고문 부착을 통해 안내를 예정입니다.
- 입대보증금 및 월입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입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2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 증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증액 청구 당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br>• 세무서 |
| | 신규취업자 | • 급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대상자<br>간이과세자<br>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br>소득세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br>•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br>•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br>•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 보험모집인<br>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br>•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br>•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 | |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일용직 근로자 | | | |
| 무직자 |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 접수장소 |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월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지명단사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 계좌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잔금 | 우리은행 | 1005-504-145315 | ㈜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902)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중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 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입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입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입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입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입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당첨된 입대료는 해당 일임차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고지 및 공고문 부착을 통해 안내를 예정입니다.
- 입대보증금 및 월입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입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2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 증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증액 청구 당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입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은 입대차계약(청년, 세아형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입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및 입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세대 중 72타입의 청약을 원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72세타입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하오니 청약전 반드시 타입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 기준 산정**

(단위 : 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 | | | |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100% 이하 | 2,991,631 | 4,562,535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110% 이하 | 3,290,794 | 5,018,789 | 6,864,572 | 7,803,626 | 7,803,626 | 8,133,012 | 8,555,826 | 8,978,639 |
| 120% 이하 | 3,589,957 | 5,475,042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이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행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발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12로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차인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중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입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및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아형 특별공급의 경우 현장 접수를 통해 세대별 2인 그룹 우선공급방식으로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세대별 3인 정원 미달 시 그룹 배정까지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자사일 이후 특별공급 중 청년, 신혼부부의 공급문제 대한 잔여물량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타 모집분이관되, 신혼부부) 예비입차인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예비입차인을 선정합니다.
- 세아형 특별공급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세대의 100%까지 예비입차인을 선정하며, 예비입차인 공급 후 잔여세대는 향후 선착순 계약 입주자 선정으로 전환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
| 일반공급 | • 임차인모집공고일(2021.05.17.(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br>•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br>•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통장 가입자로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인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차인 |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가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5.17.(월))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차인 선정 방법**

| 구분 | 내용 |
|---|---|
| 당첨자 선정 방법 |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
| 예비입차인 선정방법 | • 예비당첨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입차인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br>• 예비입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입차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예비입차인 계약 이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사업 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 **청약신청금**

| 구분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
| 특별공급(청년,신혼)<br>일반공급 전주택형 | 10만원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br>(인터넷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br>※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은 되지 않으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배너신혼부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 여정자까지 포함,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자본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3조 및 제90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구분건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Ⅲ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모집분야 | | 자격요건 | 선정방법 |
|---|---|---|---|
| 특별공급 | 청년 |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5.17.(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br>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입차인 모집공고일 기준)<br>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br>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br>(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해아래를 표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br>(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순위에 따른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br>1순위:<br>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br>2순위:<br>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10% 이하<br>3순위:<br>소득요